

예산총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2,316,225	10,569,487
일반회계	341,645,625	10,249,369
특별회계	10,670,600	320,118
기타특별회계	10,670,600	320,11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51,884	16,557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544,349	46,330
주차장특별회계	7,930,684	237,921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200,000	6,000
재정비축진특별회계	443,615	13,308
기반시설특별회계	68	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53,12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,300,000천원으로 한다.